

의안번호	2203716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4. 9. 26.
추계번호	24D1722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 신설	-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 ¹⁾ 와 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제2항 ²⁾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대상·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6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III. 미첨부 사유

가. 안 제36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 신설

-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

1) 「민법」

제166조(소멸시효의 기산점)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

제766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
③ 미성년자가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, 그 밖의 성적(性的)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

2) 「국가재정법」

제96조(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시효)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.

청구권은 「민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
 -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(이하 “민간인 집단희생사건”이라 함)
 -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(이하 “인권침해사건”이라 함)
- 2010년에 활동이 종료된 제1기 위원회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6월 까지 진실규명 조사활동을 통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6,742건, 인권침해사건 238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음
- 2022년에 신청 접수를 재개한 제2기 위원회는 2024년 8월 기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2,322건, 인권침해사건 등 1,448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음

[표 1] 제1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처리 현황

(2010. 11. 25. 기준, 단위: 건)

진실규명 범위	진실규명	진실규명 불능	각하	취하	이송	중지	총계
항 일 독 립 운 동	20	23	221	10	0	0	274
해 외 동 포 사	5	0	8	1	0	2	16
적 대 세 력 관 련	1,445	10	292	22	1	4	1,774
민 간 인 집 단 희 생	6,742	454	764	242	4	0	8,206
인 권 침 해	238	41	373	73	29	14	768
기 타	0	0	71	3	63	0	137
총 계	8,450 (75.6)	528 (4.7)	1,729 (15.5)	351 (3.1)	97 (0.9)	20 (0.2)	11,175 (100.0)

자료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, 「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」 32쪽

[표 2] 제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처리 현황

(2024. 8. 1. 기준, 단위: 건)

진실규명 범위	신청 건수	배정* 건수	조사 진행 사건			종결사건				
			조사개 시	직권 조사	사전 조사	진실 규명	규명 (확인)	불능	각하	기타**
계	20,245	20,517	7,649	6	8	6,241	618	44	3,983	1,923
항일독립 운동/ 해외동포사건	129	128	30	1	—	18	—	6	61	12
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	9,957	9,843	5,141	1	—	2,322	288	2	675	1,414
인권침해·조 작의혹·확정 판결사건	2,888	3,253	1,171	2	8	1,448	4	23	418	134
적대세력 관련 사건	3,885	4,015	1,006	2	—	2,067	326	13	288	313
역사적 중요한 사건	202	215	178	—	—	26	—	—	8	3
3·15의거 사건	492	493	115	—	—	360	—	—	1	17
기타	2,692	2,570	8	—	—	—	—	—	2,532	30

주. 1. 배정건수: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·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

2. 기타: 취하 및 여순사건 이관 사건 등

자료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멸시효로 인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희생자,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제기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건수 및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